

전대차계약서

민법 제629조 · 임대인의 동의 필수

1. 당사자 (3당사자)

원임대인 : 성명: 연락처: (동의자)

전대인 (원임차인) : 성명: 연락처:

전차인 : 성명: 연락처:

2. 원임대차 정보

원임대차 계약일 : 20 년 월 일

원임대차 기간 :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

원 보증금 · 차임 : 보증금 원 / 월세 원

3. 전대 조건

목적물 :

전대 범위 : 전부 일부 (면적: m², 위치:)

전대 기간 : 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 (원임대차 기간 내)

전대 보증금 · 차임 : 보증금 원 / 월세 원

4. 특약

1. 원임대차계약이 어떤 사유로든 종료되면 본 전대차계약도 동시에 종료되며,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.
2. 민법 제630조에 따라 전차인은 원임대인에게 직접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. 단, 전대인에게 선급한 차임으로는 원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3. 전차인은 원임대차계약상 사용·수익 제한(용도·반려동물·개조 금지 등)을 동일하게 준수한다.
4. 전차인은 목적물을 ****재전대할 수 없다****.
5. 원임대인의 동의는 본 전대차계약에 한한다.

20 년 월 일

전대인

전차인

성명 (인) : _____

성명 (인) : _____

위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동의함. ▶ 원임대인 _____ (인)